해군기지구역관리규정

[시행 1998. 11. 27.] [국방부훈령 제605호, 1998. 11. 27., 일부개정]

국방부(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군기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기관, 부대 및 부서에 적용한다.
 -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 2.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부대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2조 제4호의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전단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 2. 영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해상작전제한선"이라 함은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기지구역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입항, 안전항로, 각종훈련, 태풍시 정박 등 해상작전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설정한 선을 말한다.
 - 3. 영제6조의2 제2항 제4호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신축: 건축물이 없는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나.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및 지붕틀 중 3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재축 :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괴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분장) 해군기지구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 1. 국 방 부
 - 가.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해군기지관리업무

2. 합동참모본부

- 가. 해군기지구역 관련 법규의 입안 및 시행
- 나.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업무
- 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운영위원회 운영
- 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

바. 해군기지 관련 민원업무 처리

3. 해군본부

- 가. 해군기지구역 관련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 나. 해군기지구역의 관리 및 설정. 변경. 해제 건의
- 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예하부대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
- 라. 보호구역관련 민원업무처리
- 마. 해군기지구역과 관련 소요예산 반영
- 바. 각종 국토개발에 따른 군사적 소요건의
- 사. 해군기지구역 관련 교육계획 수립. 시행

4. 해군작전사령부

- 가. 해군기지구역 관련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 나. 해군기지구역의 관리 및 설정. 변경. 해제 건의
- 다. 작전책임지역내 해군기지구역 관리
- 라. 관할부대의 해군기지구역에 관한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승인
- 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할부대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

및 보고

바. 각종 국토개발에 따른 작전성 검토

5. 관할부대

- 가. 해군기지구역의 법령제도의 발전소요건의
- 나. 해군기지구역의 관리 및 설정. 변경. 해제 건의
- 다. 해군기지구역도, 사전분석도, 해군기지구역의 현황유지(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에 해군기지구역을 도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라. 해군기지구역의 부표, 표석 및 표찰의 설치. 관리유지
- 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바. 해군기지구역내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사. 해군기지구역안의 불법 건축물의 통제
- 아. 해군기지구역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관리에 따른 예산 건의

자. 각종국토개발에 따른 작전성 검토

제5조 (제대별 심의위원회 설치) 관할부대장은 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지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에 관한 건의사항, 관계행정기관과의 주요협의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 (기지구역의 보호범위)

기지구역에 대한 보호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군사시설의 원상보존 및 기능발휘 여건조성
- 2. 전쟁장비 물자의 연구.생산 및 저장관리에 지장 요인 제거
- 3. 전자통신 운용 등 함정장비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준수

제7조 (면허어업의 제한요청)

관할부대장은 기지구역 안의 수역에서의 어로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산업 법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구역 안의 면허어업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업무 등에 관한 작전성 검토) ①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군기지구역 안에서 법제 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작전성 검토를 검토한다.

- 1. 육상구역: 사전분석도상의 위탁지역을 제외한 도시구역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군항의 주요 군사시설물과 함정 출입항로에 대한 군작전 및 보안측면을 고려한 군사소요의 반영 여부
- 2. 해상구역: 함정통항, 교육훈련, 군사시설의 유실 및 손괴, 관측, 사계 등에 관한 지장 여부와 각종 훈련장 확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군사소요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군사작전상 장애요소의 분석과 민원제기 가능성 등
- ② 제1항의 협의 요구사항 중 해군기지보호 작전수행, 군사시설의 운영 및 탄약안전관리 등 군사상 문제점 해결을 조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업무) ① 민원사항은 민원상담실(민원실이 없는 부대는 문서접수처를 말한다)에서 접수하여야하며, 민원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담당자는 관할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에 응하여야한다.

② 국방부에 접수되어 관할부대장에게 이첩된 민원은 처리(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은 규칙 제6조에 명시된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 회신하여야한다.
- ④ 관할부대장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종합심의 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의 재심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부대의 직근상급부대에서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관할부대장 등은 다수인 관련 민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하며, 군작전과 보안측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수행절차) 해군기지구역과 관련된 협의업무 및 민원업무의 수행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규정의 준용) 해군기지구역의 관리유지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사시설보호 구역

관리규정을 민원관련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동법 시행령과 민원사무기본법. 동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605호,1998.11.27.>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